천장크레인으로 중량물 위치조정중 중량물 사이에 끼임

안전은 권리입니다

재해개요

2021.05.21.(금) 11:48경 경남 고성시 동해면 소재 ○○○(주)내 조립장에서 협력사 소속 재해자가 컨테이너크레인의 로우레그 제작을 위해, 철판 부재 사이에서 천장크레인을 조작하여 위치 조정작업 중, 철판 부재사이에 끼어 병원 입원 치료 중 사망

【 유사 재해사례 】

2021.04.17.(토) 15:10분경 경북 경주시 건천읍 소재 ㈜○○○ 사내협력사 소속의 재해자가 동료 작업자 1명과 기중기 운전자 1명(연합 크레인 대표)이 기중기(132톤)를 사용하여 제품을 야적하던 중 야적되어 있던 제품과 야적을 위해 이동 중인 제품 사이에 끼어 사망

2021.02.16.(화) 17:03분경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동 소재 ○○○(주) 원자재 창고에서 재해자가 코일(약 13톤) 반제품의 포장지 제거작업을 위해 천장크레인으로 코일 반제품을 인양하여 작업 중, 인양 중인 코일과 인근에 적재된 코일(약 6.3톤) 사이에 몸이 협착되어 사망

재해상황도

<천장크레인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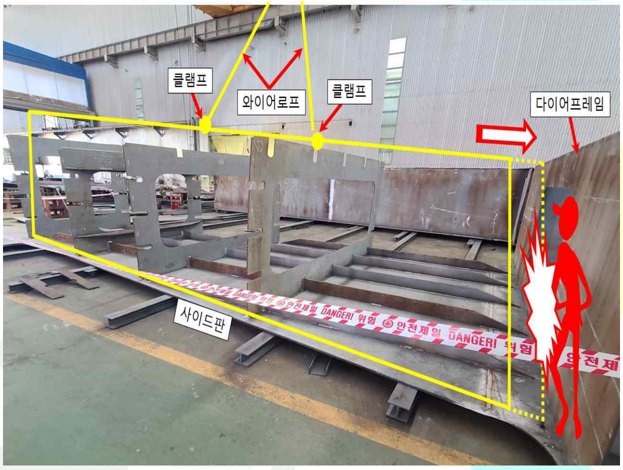

< 재해상황도 >

재해예방대책

○ **중량물 특징에 따른 위험요인 파악**

- 현장에서 취급하는 중량물의 형태, 무게, 특징 등에 따른 위험요인, 예방대책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, 근로자 작업 투입 전에 해당 공정의 위험요인을 인지시킨 후 작업에 투입하도록 관리해야 함

※ 크레인 중량물의 의도하지 않은 움직임(줄걸이 작업방법, 관성 등)에 대응하기 위해 유도로프, 레버풀러 등을 활용해 중량물 제어조치

○ **작업지위자 지정 및 위험구역 설정**

- 작업지휘자를 지정 후 배치하여 중량물 취급 시 끼임재해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근로자의 이동경로를 구분하여 중량물에 작업자가 부딪히거나 끼이지 않게 조치 후 작업토록 하여야 함

※ 작업지휘자는 작업상황을 전체적으로 살피고 지휘를 전담으로 수행하는 자로 작업자와는 구분되어야 하며 일정한 신호를 통해 작업자와 신호해야 함

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